

1. 국방 벤처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- 우수 민간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 중소·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

□ 지원규모('22년) : 131억원 (신규 70억원, 계속 61억원)

□ 지원대상

- (대상기업)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 국방벤처센터와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 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
- (개발과제)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

□ 지원분야

- (국방벤처 지원사업)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
- (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) 무기체계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고기술 위주 개발 지원
- (공 통) 국방벤처센터를 통한 국방기술 전문가 연계, 국방정보 제공, 군 유관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, 마케팅 지원

□ 지원조건

- (국방벤처 지원사업) 최대 2년 3억원(사업비의 75% 이내)
- (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) 최대 3년 20억원(사업비의 75% 이내)

□ 신청·접수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
- 신청방법 : 별도 공고
 - * 방위사업청(www.dapa.go.kr), 국방기술진흥연구소(www.krit.re.kr)

- 문의처 : (정책·제도)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(02-2079-6446)
(기획·선정·평가·관리)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(055-751-5610)

2.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

사업개요

-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

지원규모('22년) : 195억원 (신규 75억원, 계속 120억원)

지원대상

- (대상기업)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% 이상이거나 기술혁신형/경영혁신형/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
- (개발과제) 수출 가능성이 높고 무기체계 적용 가능한 기술/제품/부품

지원분야

- 해외 수출용 기술(제품)개발 및 시장개척비 지원

지원조건

- 최대 3년 30억원(사업비의 75% 이내)

신청·접수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
- 신청방법 : 별도 공고
 - * 방위사업청(www.dapa.go.kr), 국방기술진흥연구소(www.krit.re.kr)

문의처 : (정책·제도)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(02-2079-6446) (기획·선정·평가·관리)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(055-751-5865)

3. 부품국산화 개발지원

사업개요

-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,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무기체계 수출 확대를 위하여 부품 국산화 과제를 선정 후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

지원규모("22년) : 1,581.33억원 내

지원대상

- (대상품목) 무기체계 부품 중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,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 (내수, 수출 등), 다체계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

	핵심부품국산화	수출연계부품국산화	전략부품국산화
지원대상	개발비 일부	개발비 일부	개발비 일부
지원기준	핵심기술 여부, 경제성(내수 중심) 등	경제성(수출가능성, 수출규모)	중장기 발전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
참여업체	중소기업 원칙 (대·중견기업 참여가능)	대·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 참여	기업유형 무관
개발기간	최대 6년	최대 6년	최대 6년
지원방식	지정공모	지정공모	지정공모

지원분야

○ 기술(제품)개발비 지원

- * 개발업체 : 개발 성공 시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은 품목에 대하여 수의계약권 및 수입 가격을 인정(5년)하고 경상기술료 징수
- * 체계업체 : 부품개발시 필요한 체계적합성 시험을 지원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

지원조건

- (개발/개발기간) 최대 100억원* / 5년,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

- * (대기업) 총개발비의 50% 이내, (중견) 총개발비의 70% 이내, (중소) 총개발비의 75% 이내
- * 단 전략부품국산화의 경우 최대 500억원 이내의 과제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기업유형별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

신청·접수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

○ 신청방법 : 별도 공고

- * 방위사업청(www.dapa.go.kr), 국방기술진흥연구소(www.krit.re.kr)

- 문의처 : (정책·제도)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(02-2079-6443)
(기획·선정·평가·관리)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(055-751-5600)

4.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

사업개요

- 무기체계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

지원규모('22년) : 568억원 내

지원대상

- 대상과제
 - 국내 조달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무기체계(구성품 포함)
 -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 완료된 무기체계(구성품 포함)
- 대상업체
 -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
 - 상기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
 -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
 -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수출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

지원분야 : 개조개발비 지원

지원조건 :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3년간 최대 100억원

* (대기업) 총개발비의 50% 이내, (중견) 총개발비의 60% 이내, (중소) 총개발비의 75% 이내

신청·접수

- 신청·접수기관 : 국방기술진흥연구소
- 신청방법 : 별도 공고
 - * 방위사업청(www.dapa.go.kr), 국방기술진흥연구소(www.krit.re.kr)

문의처 : (정책·제도)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(02-2079-1105) (기획·선정·평가·관리)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055-751-5861